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등본입니다.

2023. 12. 14.

법원사무관 이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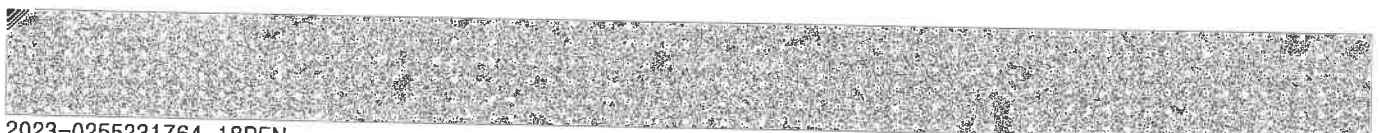
사 건 2023도7386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2.가. 전우영 (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3노31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예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및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피고인 전우영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

주심 대법관 안철상 _____

 대법관 노정희 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

